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신탁관리업자의 저작물 등의 목록 공개에 대한력 인정 >

■ 김재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647호)

2025. 8.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신탁관리업자의 저작물 등의 목록 공개에 대한력 인정	3
※ 참고자료	11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재원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5. 4. 8.

다. 회 부 일 : 2025. 4.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작권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 설정 등의 권리변동 사항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해야만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음. 이는 권리변동의 공시를 통해 저작권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임.

하지만 위탁 저작물의 경우, 신탁관리업자가 이미 별도의 공시 절차를 수행하고 있어 사실상 등록 절차가 중복되어 저작자에게 행정적·경제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등록 저작물이 증가하는 실정임.

또한, 구름빵, 검정고무신 사건 등에서 보듯 일부 대형 제작사에서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신탁 계약을 우회하여 저작자에게 직접 양도를 요구하거나 이중 양도 및 매절 계약 등을 체결하여 창작자의 정당한 권익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

이에 본 개정안은 신탁관리업자가 「저작권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위탁 저작물 목록을 공개한 경우 별도의 저작권 등록 없이도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하도록 하여, 중복된 등록절차를 생략하고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2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신탁관리업자의 저작물 등의 목록 공개에 대항력 인정 (안 제54조제2항 신설 등)

가. 개정안 요지

-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저작물 등의 목록을 공개한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권리변동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함(안 제54조제2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효력) (생략)	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효력)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신탁관리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저작물 등의 목록을 제106조제1항에 따라 공개함으로써 제1항제1호의 사항을 등록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55조(등록의 절차 등) ①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등록은 위원회가 저작권등록부(프로그램	제55조(등록의 절차 등) ① -----제54조제1항-----

램의 경우에는 프로그램등록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기록함으로써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그 신청을 한 날에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략)

5. 제53조제1항 또는 제54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항의 내용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 첨부서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생략)

③ ~ ⑧ (생략)

제55조의2(착오·누락의 통지 및 직권 경정) ① 위원회는 저작권등록부에 기록된 사항에 착오가 있거나 누락된 것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저작권 등록자”라 한다)에게

-----.

② -----

-----.

-----.

1. ~ 4. (현행과 같음)

5. -----제54조제1항-----

6. (현행과 같음)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55조의2(착오·누락의 통지 및 직권 경정) ① -----

-----제54조제1항-----

알려야 한다. ②・③ (생 략) 제55조의4(직권 말소등록) ① 위 원회는 제53조 또는 <u>제54조</u>에 따른 등록이 제55조제2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직권으 로 말소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136조(벌칙)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생 략) 2. 제53조 및 <u>제54조</u>(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 4.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제55조의4(직권 말소등록) ① --- -----<u>제54조제1</u> <u>항</u>----- -----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6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현행과 같음) 2. -----<u>제54조제1항</u>----- ----- ----- ----- 3. ~ 4. (현행과 같음)
--	--

다. 검토사항

- 현행법 제54조¹⁾는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거나 그 처분을 제한하는 등의 경우 이를 제55조제1항²⁾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³⁾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하되, 해당 권리변동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창작자에게 부여되는 것이지만⁴⁾, 저작권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해 현행법은 이러한 ‘저작권 등록제도’를 규정함으로써 저작권을 등록한 경우에 대하여 저작자의 권리 추정력, 대항력 등 일정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것임.
- 개정안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그 관리 저작물 등의 목록을 제106조제1항⁵⁾에 따라 공개할 경우 신탁관리업자에게 신탁된 저작권에 대해서는 권리변동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한 대

1) 「저작권법」 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효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2.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3. 저작재산권,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및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2) 「저작권법」 제55조(등록의 절차 등) ①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등록은 위원회가 저작권등록부(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프로그램등록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기록함으로써 한다.

3) 「저작권법」 제112조(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① 저작권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이하 이 장에서 “저작권”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알선·조정하며, 저작권 등록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권리자의 권익증진 및 저작물등의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4) 「저작권법」 제10조(저작권) ②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5) 「저작권법」 제106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목록과 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도서 또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항력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이는 저작권 ‘신탁’에 대해 사실상 ‘등록’과 같은 효과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용곤란**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의 양도·처분 제한 등 권리변동에 대한 사항을 공적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이 공개·열람할 수 있도록 공시하여 저작권의 거래질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에 비해, 신탁관리업자의 저작권 ‘신탁’에 따른 저작물 등의 목록 관리 행위는 저작권 이용허락 및 저작권료 징수 등 저작권 관리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두 제도는 상이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또한, 등록제도가 법정 공공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의해 운영되는 것과 달리, 신탁 관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받는 사업자인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음.

[저작권 등록제도와 신탁관리제도의 비교]

구 분	저작권 권리 변동 등록제도	저작권 신탁관리제도
목 적	저작권에 대한 일정한 권리 변동 사항을 등록 및 공시하여 저작권 거래 질서 안정 도모	저작물을 집중 관리하여 이용허락, 사용료 징수 및 분배 편의성 도모
운영 주체	한국저작권위원회	권리자들로 구성된 신탁단체
운영 근거	「저작권법」 제112조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라 문체부의 허가를 받아 운영

공표 방법	법정 절차에 따라 운영 ※ 등록신청서 및 제반 서류 -등록과 관련된 복제물 -등록 사유 증명 서류 -등록권리·의무자 증명 서류 등	저작권자와 신탁계약 체결 이후 저작물 관리(과거 창작한 저작물 및 장래 창작할 저작물 포함)
---	---	--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둘째, 특정 권리자 단체에 대한 신탁계약에 공적 장부 등재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저작권 등록제도의 공정성·중립성과 거래질서의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신탁관리업자는 일종의 거래 당사자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신탁을 법정 기관인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한 것과 같이 볼 경우 단일한 중립적 공시방법을 통해 거래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⁶⁾ 나아가 공시방법이 다원화될 경우 기존에 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사항 등만을 확인하여 저작재산권을 거래해 온 일반 국민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할 우려도 있음.⁷⁾⁸⁾

6)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공익성, 객관성, 중립성 담보를 위해 권리변동 등의 등록에 대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 게시 등을 통해 공시할 뿐만 아니라,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신청하는 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제공해야 함. 등록 및 사후 관리 절차 또한 위원회는 등록신청의 반려(제55조 제2항 등), 직권경정(제55조의2), 직권말소(제55조의4), 거짓 등록에 대한 벌칙 규정(제136조제2항제2호)에 관한 규정을 두어 공적 장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비밀 유지 등에 있어서도 위원회 직원에게 공무원의 제 규정을 두는 등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제55조의5, 제131조, 제137조제1항제7호).

7) 이에 부동산 등기제도(법원), 자동차 등록제도(지방자치단체) 및 특허 등록제도(특허청) 등은 모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원화 된 공시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음.

8) 주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신탁계약은 인별신탁(人別信託, 권리자가 과거에 창작한 모든 저작물은 물론이고 장차 창작할 저작물의 권리에 대해서도 신탁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일부 저작물을 신탁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개별 저작물의 신탁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며, 인별신탁된 경우 개별 저작물의 권리변동 상황이 제대로 공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항력이 부여되면, 저작물을 거래하는 제3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므로

- 해외사례의 경우에도 공적인 영역에서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인들로 구성된 민간 권리자 단체에서 이를 운영하는 경우는 찾기 어려움.⁹⁾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 8.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개최된 ‘2024 저작권 쟁점 대토론회’ 당시 저작권신탁관리단체 등록의 대항력 부여에 관해 논의한 바 있으며, 해당 쟁점에 대해 대다수의 저작권 전문가들이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¹⁰⁾
- 이에 대하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는 대등한 협상력을 가진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통해 양도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저작권자를 보호할 수 있으며, 신탁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저작물 등록 시 소요될 비용과 행정적 부담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함께하는 음악저작권협회**에서는 음악 분야 특혜로 인한 장르 간 형평성 침해, 공시제도의 불완전성으로 창작자 권리 침해 등의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한국방송협회**에서는 본 개정안을 통해 매절계약 근절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개정안은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 저작권자와 이용자 모두의 이익에 기여하지 않으며 오히려 불안

거래 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음.

9) 해외사례는 첨부한 [참고1]참조

10) 별첨 [참고3] 참조

정성만 증가시킬 수 있어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이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도 저작권 등록부에 법정 사항을 등록하여 저작권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저작권 등록제도의 취지에 반하며, 신탁관리업자만을 보호하고 개별 창작자의 권리 보호에 역행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¹¹⁾

- 관련하여 제21대 국회에서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3건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8964호 김용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23090호 한준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25754호, 이상헌의원 대표발의)이 임기만료폐기된 바 있음.

문 의 처
02)6788-5376

11) 별첨 [참고2] 참조

참고1

해외 사례

- 저작권 '권리변동 등록제도'를 운영하는 국가(45개국)는 등록제도를 공공행정의 일부로 운영하고 있으며, 권리자 단체인 집중관리단체(CMO,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가 등록제도를 운영하는 사례는 없음.

* (출처) 「Survey on Voluntary Copyright Registration Systems」

(세계지식재산기구(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가입 193개국 중 106개국 응답)

국가명	내용
일본	• 제도 운영주체 : 문화청 • 등록 효과 : 권리 변동 사실에 대한 제3자 대항력 제77조(저작권 등록) 다음에 열거된 사항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저작권의 이전 또는 신탁에 의한 변경 또는 처분의 제한 2. 저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혼동 또는 저작권 또는 담보하는 채권의 소멸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제78조(등록 절차 등) 제75조 제1항, 제76조제1항, 제76조의2제1항 또는 전조의 등록은 문화청장관이 저작권등록원부에 기재하거나 기록하여 수행한다.
미국	• 제도 운영주체 : 저작권청 • 등록 효과 : 이중 양도 시 우선 순위 설정 제205조 이전과 그 밖의 문서의 등록 (a) 등록의 요건.- 저작권의 이전 또는 그 밖의 저작권에 관련한 문서는, 등록을 위하여 제출된 문서에 이전인의 실제 서명이 있거나 원본과 상위 없다고 서약된 공식 증명서가 첨부된 경우에 저작권청에 등록할 수 있다. (b) 등록증명서.- 저작권청장은, (a)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서류를 접수하고 제708조에 규정된 수수료를 영수한 때에는 이를 등록하고 등록증명서와 함께 그 서류를 반환하여야 한다. (c) 의제 통지로서의 등록.- 저작권청에 등록된 문서는 모든 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등록된 문서에 기술된 사실에 대한 의제 통지(constructive notice)가 된다. (1) 그 문서 또는 그에 첨부된 자료가 저작물을 확실하게 식별하고 있어서 저작권청장이 그 문서를 색인화한 후에는 저작물의 제호나 등록번호로 합리적인 검색에 의하여 찾을 수 있고, 그리고 (2) 그 저작물이 등록된 경우 (d) 양도가 경합되는 경우의 우선권.- 2개의 양도가 경합되는 경우에, 먼저 행하여진 양도가 미국 내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1월 이내에 또는 미국 밖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2월 이내에 (c)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통지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방법으로 등록된 때 또는 후에 행하여진 양도가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등록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우선한다. 그러나 후에 행하여진 양도는 동일한 방법으로 먼저 등록되고 가치있는 대가를 지불하거나 이용료를 지불한다는 구속력 있는 약속 하에 먼저의 양도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선의로 행하여진 때에는, 나중의 이전이 우선 한다. (e) 경합되는 소유권의 이전과 비배타적 이용허락 사이의 우선권.- 비배타적 이용허락은 등록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이용허락이 허락받은 권리의 소유자 또는 그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받은 대리인이 서명한 문서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합되는 저작권의 이전에 우선한다.

	(1) 그 허락을 이전이 있기 전에 취득하거나; 또는 (2) 그 허락을 이전이 등록되기 전에, 그 사실을 모르고 선의로 취득한 경우
캐나다	• 제도 운영주체 : 저작권청 • 등록 효과 : 권리 양수인 증거로 이용 저작권청 제46조 저작권청은 특허청에 소속된다. 저작권, 인증서 그리고 인증된 사본의 등록 제49조 특허청장, 저작권 등록관, 저작권청의 직원은 인증서 및 저작권 등록부의 인증된 사본에 서명할 수 있다. 증거로서의 등록 제53조 53 (1) 저작권 등록부는 그 안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증거이며, 등록부의 항목에 대한 사본은 특허청장, 저작권 등록관 또는 저작권청의 직원이 진정한 사본으로 인증한 경우 각 항목에 대한 증거이다. 저작권 소유자 (2) 저작권등록증은 저작권이 존속하고 등록된 자가 저작권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증거이다. 양수인 (2.1) 저작권 양도 등록 증명서는 증명서에 기록된 권리가 양도되었고 등록된 양수인이 해당 권리의 소유자라는 증거이다.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참고2

협회, 민간업계 및 시민단체 의견

기관	주요내용
한국음악 저작권협회	○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저작물 등의 목록은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하면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저작권을 신탁한 경우 등록 없이도 제3자 대항력을 갖도록 하여, 대등한 협상력을 가진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통해 양도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저작권자를 보호할 수 있음 ○ 제54조의 개정을 통해 신탁관리업체가 관리하는 저작물의 재차 등록 시 소요될 수많은 비용과 행정적 부담 등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으며, 정부 기관의 관리 감독을 받는 공신력 있는 단체를 통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공시 효과를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어 저작물의 거래 질서를 안정시키는 제도 본연의 목적 또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함께하는 음악 저작권협회	○ 창작자 보호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본 개정안은 저작권 제도의 핵심 원칙과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신중한 재검토 필요 * ①등록제도의 공공성 훼손 및 공·사 기능 충돌 발생, ②음악 분야 특혜로 인한 장르 간 형평성 침해, ③공시제도의 불완전성으로 창작자 권리 침해 우려, ④비교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예외적 대항력 부여
한국방송 협회	○ 찬반여부: 반대의견 ○ 본 개정안을 통해서는 개정안의 제안이유로 제시한 매절계약 근절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함 ○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위탁 저작물 공시로써 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등록을 갈음할 경우 거래 질서 안정을 위협함 ○ 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 사단법인에 불과하며, 신뢰도 낮은 관리저작물의 목록의 공개만으로 저작권 등록 제도를 대신할 수 없음 ○ 개정안은 저작권신탁관리단체만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 저작권자와 이용자(플랫폼) 모두의 이익에 기여하지 않고, 오히려 법적 불안정성만 증가함 ○ 본 개정안 신설 제54조제2항은,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업무태만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를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는 부당한 규정임
한국인터넷 기업협회	○ 본 개정안은 신탁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상 등록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고 있어 저작권 등록부에 법정 사항을 등록하여 저작권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저작권 등록제도의 취지에 반함 ○ 본 개정안은 정당한 근거가 없음에도 저작재산권 거래의 안전을 희생시켜 신탁관리업자만을 보호, 개별 창작자의 권리 보호에 역행을 초래함 ○ 저작물 목록 공개만으로 제3자 대항력을 인정하는 국제적 입법례는 없으며, 저작권의 경우 그 특성상 국제적 분쟁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 법적으로 저작권의 유효성 입증을 위해서는 국제적 관행을 따르는 것이 중요함

참고3

2024 저작권 쟁점 대토론회

- '24년 8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개최된 <2024 저작권 쟁점 대토론회> 당시 저작권신탁관리단체 등록의 대항력 부여에 관해 논의한 바 있으며, 해당 쟁점에 대해 대다수의 저작권 전문가들은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찬성 1명¹²⁾, 반대 24명¹³⁾,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음 2명¹⁴⁾)
※ 조건부 찬반 입장 포함

입장	주요 논거
반대	• 저작권 권리변동 등록과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회원 등록 내지 작품 등록은 용어상의 유사성과 별개로 각기 상이한 목적과 성격, 절차를 가진 제도라고 볼 수 있음 • 거래 당사자에 불과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신탁계약 및 관리내역을 공중에 공개하는 것에 공적장부의 기재에 준하는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공정성·중립성 측면에서도 문제이며, 객관성을 담보할 수단도 없음 •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신탁 저작물에 대항력을 부여하는 방안은 단일하고 중립적인 공시방법을 통해 거래 안전을 도모한다는 저작권 등록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각 기관의 공시에 차이가 날 경우 이용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 저작물 종류별로 다양한 신탁관리단체가 존재하며 신탁률 또한 저작물 종류나 단체별로 차이가 큰 상황인 바, 이용자들이 저작물마다 각 단체에의 신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예상되고 거래상 불안이 야기될 우려 • 저작권 이중양도 등 문제점은 특정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잘못된 운영 방식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탁계약 약관 등 개선을 통해 해결할 사안이나, 개정안은 오히려 해당 단체에 특권을 부여하는 입법(안)이라고 할 것임(→ 원칙대로 등록대항효의 적용을 받는 일반인의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할 우려) • 저작권 양수인이 신탁계약을 해지할 경우 대항력 소멸 여부(사실상 해당 단체에 신탁을 강제하는 결과, 권리자의 자율성 침해),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허가 취소 또는 업무 정지 등의 경우 대항력 유지 여부 등이 문제될 수 있음 • 당연대항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해외 국가들(독일, 일본 등)에서도 저작권자가 도산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 이해관계 균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을 뿐인바 절차상의 편의 등을 이유로 해당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음
찬성	• 개정안에 따르면 제작사 측에서 개별 창작자가 아닌 대등한 협상력을 가진 신탁관리단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고, 또한 계약 내용은 관계 당국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정형화되므로 불공정 소지가 없다고 할 것임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12) 홍익대 오승중 교수.

13) 한양대 김병일 교수, 상명대 김인철 교수, 한국저작권위원회 김현철 (전)정책연구실장, 상명대 김경숙 교수, 숙명여대 문선영 교수, 한양대 박성호 교수, 경북대 배대현 교수, 경상대 신재호 교수, 고려대 안효질 교수, 중앙대 이규호 교수, 사법정책연구원 이규홍 수석연구원, 고려대 이대희 교수, 경희대 이상정 명예교수, 한양대 이주연 교수, 충남대 이철남 교수, 성균관대 이해완 교수, 한국저작권법학회 이호홍 명예회장, 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변호사, 법무법인 린 전웅준 변호사, 홍익대 조희경 교수, 경북대 차상욱 교수, 저작권문제연구소 최경수 대표, 대구대 최진원 교수, 조선대 한지영 교수.

14) 부산대 계승균 교수, 인하대 김원오 교수.